

#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의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전 빈도가 적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임기(안제19조)

-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

나. 회의록 작성 및 서면심의 규정 신설 (안 제21조 제5항)

-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3. 09. 15. ~ 2023. 10. 0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관계법령 발취

## 【농기계화 촉진법】

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【 지방자치법 】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# 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# 3. 미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
연락처	(033) 330 - 1306